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
------	---

2014. 9. 25.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7월 1일, 김인호의원의외 75명

나. 회부일자 : 2014년 7월 1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2014. 9. 25)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김인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과정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서울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촉진,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소상공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시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 함(안 제6조).
- 시장은 신용보증, 창업교육, 판매촉진, 경영컨설팅 등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함(안 제8조).
-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관련단체의 설립과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과 각종 지원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제정안의 개요

- 제정안은 서울소재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해 균형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소상공인 경영환경의 변화와 지원

-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우리 나라의 유통산업은 세계적인 거대 유통기업의 국내진출과 이들의 영업방식을 벤치마킹해 국내 현실에 맞게 적응하는데 성공한 국내 대기업들 중심으로 급속히 개편되었음.
- 이와 함께 국민들의 소득증가와 승용차 보급의 확대는 주차장을 비롯한 편의시설에서 절대적으로 취약한 전통시장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 하였음.
- 또한,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경기둔화에 따라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주요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5%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고 답하고 있는 등 국민 체감경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¹⁾.
- 서울시(이하 “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년간 약 2,6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시

1) 중소기업중앙회(2014.7), “2014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하반기 전망 결과 보고서”

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생계형 자영업점포 특별지원, 찾아가는 경영컨설팅, 공동브랜드 개발 등의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다각적으로 시행해 왔음.

다.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 제6조, 제7조)

- 안 제4조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의 각종 시책의 발굴·추진 의무를 정하고 있음.
- 2010년 서울 총 사업체(729,731개) 가운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자영업 사업자(600,672개)가 82.3%를 차지할 정도로 소상공인이 서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이들의 경영여건 개선없이 서울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시는 지난 2012년 ‘서민 자영업 종합보호대책 추진 계획’을 통해 서민 자영업 자생력 제고와 생계형 자영업 특별보호, 중소유통 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왔음.
-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센터, 자영업 교육, 위기생계형 자영업 점포 지원을 포함한 각종 대책마련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주변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지원사업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 시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의무를 시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정의 주요 과제로 이를 다루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임.
- 아울러, 안 제6조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매 3년마다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자치조직 구성, 상권활성화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안 제7조가 소상공인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에 대한 실천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경영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안 제6조제3항에서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소상공인 지원 계획과 성과에 대한 의회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정보의 공개성을 강화할 조치로 기대됨.

라.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9조, 제11조)

- 안 제9조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안 제11조가 규정하고 있음.

- 상권분석, 각종 사업계획 검토, 세무, 회계관리를 비롯한 경영지도 등 소상공인과 초기 창업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위한 센터의 설치 필요성은 소상공인의 장기적인 생존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시는 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4개 지역본부별로 센터를 설치해 24명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창업보증관련 상담에서부터 각종 경영지도, 상권분석 등의 전문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음²⁾.
-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현재 운영중인 센터의 자치법적 설치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2014년 센터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제반 경비에 필요한 예산규모는 약 22억 8천만원임.
- 향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보다 능동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보강과 현장중심의 컨설팅 확대 등 센터 역량 제고가 필요할 것임.
- 아울러, 센터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재 위탁사무인 센터 운영사무를 서울신용보증재단 고유사무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안²⁾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마.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안 제10조)

2)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2013년 4,745개 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을 실시했고, 2,725건에 모두 617억원의 창업자금 지원도 시행하였음.

- 안 제10조는 소상공인 단체 육성과 이들 단체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주요 지원정책의 소극적인 수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스로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단체의 구성은 필수적인 조치라고 판단됨.
- 이런 필요에 따라 최근 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단체의 법인화 설립과 운영 지원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정보제공, 교류 역할을 수행할 ‘어울림센터’도 개설해 활용토록 하고 있음.
- 소상공인 스스로의 자존감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 차원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구성과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며, 관련 시책의 직접 수혜자로서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여전히 소상공인단체의 법인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지역별로 단체 구성에 대한 의지가 상이한 사정을 고려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상공인 단체 지원 노력이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과 그 사업에 관련되는 자는 시의 소상공인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6조(소상공인지원계획)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중소유통물류센터 설치 등 유통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
7.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서울 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3. 공동화 또는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4.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6.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 각 호의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지원
2.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확산
3. 자영업 업종별 전문 컨설팅단 운영
4. 과밀업종 분산과 경쟁으로 인한 수익감소 방지를 위한 업종별 현황 등 통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제8조 및 제9조에 대한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